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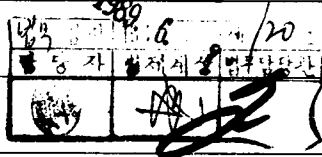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개 30320-197		기안용지 (전화: 731-6353)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89. 6					
보조 기관	도시계획국장	전 결	협 조 기 관	법무담당관실 시의회계장 <i>김도</i>		문서통제	
	도시개발과장	<i>김</i>		예산 2 계장 회계심사계장		1989. 6. 08	
	환지계장	<i>김</i>		관리계장 <i>김</i>		통관관	
기안책임자		노 경 찬		발 송 인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명의		1989. 6. 08	
제 목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제1안	내부결재						
1. 우리시에서 '89.6 사업시행 원부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중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반포압구정 아파트지구내 환지변경의							
로 인한 공공시설 (도로, 공원등) 미설치와 아파트지구 잔여지 처리대책과 관련							
하여 건설부에 요청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보완검토로 인하여,							
부득이 '89.12.31까지 환지확정 처분의 연기가 불가피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 및 제14조(규약							
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4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코저 합니다. 139							

1505-25(2-1)일(1)갑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85. 9. 9. 승인 "내가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가 40-41 1988. 6. 2.

4-2

가. 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내용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자	사업시행 기간		비 고
			당 초	변 경	
영동지구	26,764,872.9m2중 5,421,066.6m2	서울특별시장	'68.1.18 -89.6.30	68.1.18 -89.12.31	6개월 연장
나. 공고 개요					
1) 공고종별 : 일간지 2개사 및 시보계재					
2) 소요예산 : 1,348,380원					
(3단 x 9cm x 22,7001원 x 2개사 x 1.1)					
3) 지출과목 : 계속지구, 영동토지, 사무관리, 수용비및수수료					
4) 지출방법 : 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지불					
제 2 안	 				
공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484호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에 따른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6호 ('68.1.18) 및 제77호 ('71.8.24)로 사업시행 인가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지구중 환지확정 처분 미완료된 반포,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코저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통지는 본공고로 같음합니다.

1989. 6

서울특별시

가. 사업계획 변경 내용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영동지구	26,764,872.9m ² 중 5,411,066.6m ²	서울특별시	68.1.18	68.1.18	6개월 연장
			-89.6.30	-89.12.31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같은건

1.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지구중에 반포,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하였기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기 바람.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종합건설본부장(공사1부장), 강남구청장(도시정비과장),

서초구청장(도시정비과장), 관재과장

제 4 안

수신 공보관

발신 도시개발과장

제목 공고개제 의뢰

141

1.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중 반포,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였기 일간신문 및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안 "나"항 공고개요 이기시행

첨부 공고문 사본 3부. 끝.